

건설공사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폭발 재해예방 안전대책

■ 용접작업이란 ?



- ▶ 용접하고자 하는 두 개 이상의 모재(주로 금속) 간에 연속성이 있도록 접합부분에 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결합시키는 과정
- ▶ 용접종류로는 용접, 압접, 납땜 등이 있으며, 용접은 모재의 접합부에 열을 가하여 접합하는 방법이고, 압접은 접합부 가열 후 압력을 주어 접합하는 방법이며, 납땜은 용융점이 낮은 납 등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방법

■ 용접·용단작업 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성

-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
-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짐
- 용접 비산불티는 1,600°C 이상의 고온체
-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최소 직경 0.3~3mm 정도
- 가스 용접 시는 산소 압력, 절단속도 및 절단방향에 따라 비산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최근 5년간 용접·용단작업 관련 화재·폭발 중대재해

재해 발생 기인물(착화물)	건수	비율(%)
인화성가스	5	35.7
인화성물질(드럼·용기 관련 작업)	4	28.6
우레탄 판넬류	2	14.3
발포우레탄	1	7.1
기타 발화재	2	14.3
총합계	14	100

공사종류별	건수	비율(%)
공장(연구소 포함)	3	21.4
군시설	2	14.3
도로 및 관로	2	14.3
빌딩	2	14.3
기타시설	5	35.7
총합계	14	100

최근 5년동안 용접·용단작업 관련 화재·폭발 중대재해 분석 결과, 착화물은 인화성가스(35.7%), 인화성 물질(28.6%), 우레탄 판넬류(14.3%), 발포 우레탄(7.1%), 기타 발화재(14.3%) 순이며, 재해발생 공사종류는 공장(21.4%), 군시설(14.3%), 도로 및 관로(14.3%), 빌딩(14.3%) 순으로 나타남

■ 기인물질 별 주요 사고발생 형태

✓ 인화성 가스, 인화성 물질

- 인화성 유증기 및 인화성 액체 등이 체류할 수 있는 용기·배관 또는 밀폐공간 인근에서 용접·용단작업 실시 중 불티가 유증기 등에 착화

✓ 발포 우레탄

- 스프레이 뿐칠 발포우레탄 인근에서 용접·용단 중 불꽃이 튀어 우레탄에 축열되어 발화
- 샌드위치 패널 또는 우레탄 단열판 내로 용접·용단 불꽃이 튀어 축열되어 발화

✓ 기타 발화재

- 용접·용단 불꽃이 비산하여 가연물(자재, 유류가 묻은 작업복 등)에 착화
-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공기 대신으로 산소를 사용하여 산소에 발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용접·용단작업 시 착화물질별 화재 폭발 사고 사례

■ 우레탄폼 착화 사례



자수판 용접 중 하부 우레탄보온판 화재로 4명 사상('13.11.26, 서울 구로)
가설전등 스파크로 인한 우레탄폼 화재로 13명 사상('12.8.13, 서울 종로)

■ 유증기 착화 사례 [1]



에탄을 누출 인근에서 용접 중 폭발로 2명 사상('13.4.8, 전남 화순)
화목난로용 페드럼통 용단작업 중 폭발로 1명 사망('13.1.24, 충북 영동)

■ 유증기 착화 사례 [2]



메탄카스 누출 인근에서 용접 중 폭발로 6명 사상('12.3.16, 경기 고양)
구 톨루엔 저저장탱크 이전 설치 용접 중 폭발로 2명 사망('11.7.10, 경기 시흥)

■ 기타 발화재 착화 사례



주차타워 내부 용단 중 폴리에틸렌 단열재 화재로 3명 사상('14.10.14, 서울 마포)
강관내부 용접 중 작업복에 착화로 1명 사망('12.12.25, 대전 동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건설공사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폭발 재해예방 안전대책

[교육 - 관리감독 - 작업방법 측면의 체계적 사고예방대책]

■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원·하청 간 명확한 작업지시 체계를 확립하고 화기작업 지역의 모든 공사참여 협력업체별 관리감독자가 함께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공유
- 용접·용단작업 시 인화성 물질 착화 화재의 특징, 대처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관리감독 및 점검 활동

- 인화성 물질 또는 가스 잔류 배관·용기에 직접 또는 인근에서 용접·용단 시 위험물질 사전 제거 조치
- 용기 및 배관에 인화성 가스, 액체 체류 또는 누출 여부 상시 점검 후 위험요인 제거
- 전기케이블은 절연조치하고 피복 손상부는 교체, 단자부 이완 등에 의해 밸열되지 않도록 조임
-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통하여 전원 인출
- 가스용기의 압력조정기와 호스 등의 접속부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항상 점검
- 착화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및 인화성 가스 체류 배관·용기, 우레탄폼 단열재 등의 인근에서 용접·용단작업과 같은 화기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인 배치

[화재감시인 배치 장소]

- 작업현장에서 반경 10m이내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있을 때
- 작업현장에서 반경 10m이내에 벽 또는 바닥 개구부를 통해 인접지역의 인화성 물질에 발화될 수 있을 때
- 금속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한쪽이나 반대쪽 면에 인화성 물질이 인접하여 열전도 또는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을 때
- 인화성 물질이 작업현장에서 반경 10m이상 떨어져 있어도 불티에 의해 발화될 수 있을 때
- 밀폐 공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인의 임무]

-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에 화재 진화능력 구비
-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 확인
-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
- 용접·용단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가능성 및 발생 여부를 확인

■ 안전작업방법 준수

- 인화성 물질은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인화성 물질을 옮길 수 없다면 방화덮개나 방화포로 보호)
- 용접·용단작업 실시 장소에는 “경고·주의” 표지판 설치, 작업장소 인근에 적정 능력 소화기 비치
- 지하층 및 밀폐공간은 강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급·배기를 실시
- 화재로 정전되더라도 비상 작동되는 경보설비(연면적 400m²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시)와 외부와의 연락장치, 유도등, 비상 조명시설 등 설치로 비상 대피로 확보
- 용접·용단작업은 우레탄폼 시공보다 선행하는 등 작업 공정계획 수립 시 화재예방 면밀히 고려

용접·용단 시 화재폭발 사고는 작업자가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 및 근로자 안전교육, 관리감독 이행, 안전작업방법 준수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우레탄폼의 반응 매커니즘 및 발화 시의 특징

■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는 우레탄폼

건축물에 사용되는 우레탄폼의 종류로는 단열재 등으로 미리 성형 제조한 우레탄폼 단열판, 벽체 및 지붕재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복합재질 샌드위치 판넬,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스프레이 우레탄폼 등이 있음



냉동창고 벽면비단 스프레이 시공

일반건축물 천정부 스프레이 시공

우레탄 폼 단열재 (우레탄 보드)

우레탄 샌드위치 판넬

■ 우레탄폼 반응 매커니즘 및 발화 시의 특징

[반응 매커니즘]

- 폴리우레탄 발포체는 성형할 때 고분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나, 통상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빠른 두 액상원료[(diisocyanate:A액)와 (polyol:B액)]를 혼합시켜 기체(CO₂) 발생 및 고분자화 반응 진행 시 급격히 점도가 상승하며, 발열반응에 의해 체적 팽창으로 발포체가 형성

[발화 시의 특징]

- 우레탄폼은 할로겐화합물이나 인(Phosphate)을 첨가시킬 경우 난연성을 띠기는 하나 불연성은 아니며, 한번 불이 붙으면 폭열을 일으키면서 연소하는 특성이 있음. 특히 1.000°C 이상되는 용접불티가 발포 우레탄에 떨어지면 우레탄 속으로 파고 들어가 서서히 연소하고 일정시간이 경과되어 발화되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음
- 우레탄폼 발화 초기에는 흰 연기를 내며 분해반응을 일으키다 발포체가 녹아 타면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급격히 확산되고, 우레탄폼 표면의 피막으로 인해 소화약제 침투가 어려워 일반 화재보다 화재 진화가 어려움
- 우레탄폼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에는 염화수소(HCl), 황화수소(H₂S),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이산화황(SO₂), 시안화수소(HCN) 등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유독가스를 흡입 시 치사 원인으로 작용

[우레탄폼 착화로 인한 대형사고 사례]



부산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
('98.10.29 사망27, 부상16)

서울 구로 오피스텔 신축공사 화재
('07.3.17 사망1, 부상60)

이천 물류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
('08.1.7 사망40, 부상10)

서울 종로 미술관 신축공사 화재
('12.8.13 사망4, 부상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